

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
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, 제8항 및 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,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위해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3. 7. 4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



1. 건 명: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, 제8항, 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,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, 같은 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: 2023. 7. 4. ~ 2023. 7. 18.(15일간)
5. 문의사항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오형석(☎ 031-828-0832)

[붙임]

공 시 송 달 자 명 단

(공 고 기 간 : 2023. 7. 4. ~ 2023. 7. 18.)

연 번	사 업 장 명	사 업 장 관 리 번 호	서 류 의 명 칭	서 류 의 주 요 내 용		송 달 불 능 사 유	주 소
				회 수 금 액	회 수 사 유		
1	와 이 ○ 투 ○ ○ ○ (Y○2○)	878-11-○ ○ ○ ○ ○ -0	고 용 축 진 장 려 금 부 당 이 득 회 수 처 분 관 련 사 전 통 지 및 의 견 제 출 안 내	2,000,000원	감 원 방 지 의 무 기 간 미 준 수	폐 문 부 재	경 기 도 의 정 부 시 이 하 생 략